

제조물책임(PL)의 필요성

글 · 김학기 대표 대원조명

우리나라에서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제정은 의는 지금부터 장장 20년을 거슬러 올라가 198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청사진 정도로 그쳐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동년 12월 16일 국회본회의를 거쳐 역사적으로 통과하였다. 그후 2000년 1월 12일에 제조물책임법이 공포되었지만, 부칙에 의해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예정됐다. 사실은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가 필요함을 배려하여 PL법의 시행을 2년 6개월 유예한 것인데,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책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원칙을 규정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위법령이 필요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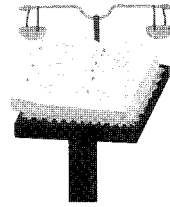
또한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전문8조와 부칙2조항의 간단한 법이지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다른 행정법에서 두고 있는 하위법

령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이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 곧 동산의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이다.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조자가 그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무과실책임제도의 도입인 것이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의 입법은 직접적으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고 내구성있는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확실히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대중 일반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 제품이 계속 출현하고, 우리 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공산



품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합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제품의 결합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가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라는 유통구조로 특징지어져 있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정보나 능력의 격차가 현격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적 법률문제에 대한 근대적 민사책임법리의 한계가 노정됨에 따라 좀 더 강화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이러한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을 여실히 반영한 새로운 민사책임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이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기업체의 사회적 인식과 체질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제고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단순히 안전기준을 할 수 없이 맹목적으로 준수하기보다는 자주적으로 제품의 고품질확보와 향상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안전성은 물론 내구성의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기업의 전략은 선진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분명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고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제품의 특성,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문구 등 안전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주요국 대부분이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조화의 측면에서도 필히 넘어야 할 고비인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을 입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제품이 전세계의 수출대상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이 국내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6개월여 남겨놓고 이 피할 수 없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분명히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지만 또한 동시에 업체로서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사적인 기회의 장으로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조자와 소비자 쌍방을 위한 진일보된 법으로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하여 PL법을 살아 움직이는, 그야말로 약동하는 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조자와 소비자,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들은 둘이 아닌(不二), 한몸(一體)인 것이다.